# 평생교육원 운영세칙

| | | |
|---|---|---|
| 제정 2005. 09. 01 | 개정 2013. 02. 01 | 개정 2017. 12. 04 |
| 개정 2007. 03. 01 | 개정 2014. 08. 01 | 개정 2015. 09. 01 |
| 개정 2011. 02. 01 | 개정 2015. 09. 01 | 개정 2017. 12. 04 |

**제1조**(목적)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(이하 "본원"이라 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**제2조**(교·강사 위촉 및 자격) ① 본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교·강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② 학점인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·강사의 위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1.2.1., 2014.8.1.>

③ 학점 불인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·강사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, 공개채용, 기타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위촉하되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 <신설 2015.8.00.>

**제3조**(학습비 책정) ①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는 학습과목별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금액을 산정하여 책정하되 교과목의 특성과 수업시수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07.3.1., 2014.8.1.>

② 본원 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강인원, 교·강사의 자격, 타 기관의 학습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를 책정하되 운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③ 본원 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외부위탁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는 외부위탁기관의 사업지원금, 모집인원, 강의료,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외부위탁기관의 사업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 <신설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**제4조**(학습비 감면 및 환불) ① 학습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8.1.>

1.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과정은 학습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며 장학금 지급 등으로 대체한다. <개정 2007.3.1., 2014.8.1., 2015.9.1.>

2. 특별과정 및 자격증 과정 등 학점 불인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 감면은 교·직원 본인 30%, 교·직원의 직계가족, 수원여자대학교 외래교수(해당학기 출강) 20%로 하며, 한 학기 2개 교육과정 이상 등록자(각 과정별 학습비 감면), 본원 수료생, 본교 졸업생, 본교 재학생 및 학부모, 보육교사교육원생은 10%를 적용하되 운영경비, 학습자수, 모집율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3.1.,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② 학습비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4.8.1., 2015.9.1.>

**제5조**(강의료 지급) ①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강의료는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2007.3.1.,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료는 본 대학의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7.3.1.,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③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료는 위탁기관의 강의료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책정하고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07.3.1., 2011.2.1., 2014.8.1., 2015.9.1.>

④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학점불인정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 <신설 2014.8.1.>

**제6조**(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) ① 학점인정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되 필요한 경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4.8.1.>

1. 학점인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점은행제 학습과목단위 또는 전공단위의 학습과목 평가인정 편람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4.8.1.>

2. 학점인정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기본적인 교육 수요조사와 운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반영한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4.8.1.>

3. 학습과목의 개설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및 수원여자대학교 특별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점불인정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원장의 승인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4.8.1., 2015.9.1., 2017.12.04.>

②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교 및 본원에 소속된 전임교수 및 외래교수, 외부기관 전문가 등에게 강의계획, 수업운영, 교·강사 위촉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고, 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5.9.1., 2017.12.04.>

③ 학점인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학사관리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지침을 준수하고, 학점불인정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수업일정, 학습자평가, 출결관리, 수료기준 등의 학사관리사항을 보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는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4.8.1., 2015.9.1.>

**제7조**(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와 개선) 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운영목적의 달성도 및 효과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한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5.9.1.>

②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는 프로그램의 성격 및 수강생의 특성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. <신설 2013.2.1.><개정 2015.9.1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